

지방입법정책 발전 및 지역공익법률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서

국립강릉원주대학교와 강릉시의회(이하 “양 기관”이라 한다)는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지방입법정책의 발전과 지역사회 공익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.

제1조(목적) 본 협약은 국립강릉원주대학교와 강릉시의회 간의 상호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강릉시 지방입법정책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고, 지역 주민을 위한 공익법률지원을 활성화하며 이를 통하여 지역인재 양성 및 거버넌스 역량 강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협력사항) 양 기관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상호 협력한다.

1. 지방입법정책 관련 자문 및 지원
2. 입법정책 관련 공동 연구 및 학술 교류
3. 지방의회 입법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
4. 지역 공익법률지원 및 주민 권익 보호
5. 학생 및 연구자의 정책연구 참여 지원
6. 기타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제3조(실무협의체 구성 및 운영) ① 양 기관은 제2조의 협력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동 실무협의체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실무협의체의 구성·운영 등 구체적인 세부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.

제4조(비밀유지) 양 기관은 본 협약의 이행 과정에서 취득한 상대방 기관의 기밀사항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. 다만, 상대방 기관의 동의가 있거나 법령에 따라 공개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5조(협약의 해지) 양 기관은 본 협약 사항을 이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상호 협의를 거쳐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. 다만, 협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은 30일 전까지 상대 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.

제6조(효력발생 및 유효기간) 본 협약은 양 기관의 대표가 합의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, 협약의 유효기간은 양 기관의 별도의 해지의사표시가 없는 한 계속 유효한 것으로 한다.

제7조(협약의 추가 및 변경) ① 본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, 양 기관의 서면 합의에 따라 협약 내용의 일부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.

② 제2조의 협력사항을 원활히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의 세부 협약을 체결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.

제8조(협약의 이행 및 해석) 양 기관은 이 협약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,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협약의 해석에 관하여 협의가 필요한 경우 관계법령 및 일반적 관례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.

이 협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상호 합의하고,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협약 당사자의 대표가 서명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.

2026년 1월 21일



국립강릉원주대학교
GANGNEUNG-WONJU NATIONAL UNIVERSITY



강릉시의회
GANGNEUNG CITY COUNCIL

총장 박 덕 영

의장 최 익 순